



< 수시 공시 >

2012.4.30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 3 항 제 5 호에 의거, 당 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,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(발생일기준)

가. 발생 일자 : 2012.4.27(금)

구분	집합투자기구 명칭	발생일 설정잔액(원)	발생일 순자산총액(원)	기준가격
1	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A형	2,062,366,453	2,031,996,630	985.27
2	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C형	1,205,335,955	1,184,289,778	982.54
3	신영코리아밸류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2,759,843,906	2,743,338,628	994.02

나. 발생 일자 : 2012.4.28(토)

구분	집합투자기구 명칭	발생일 설정잔액(원)	발생일 순자산총액(원)	기준가격
1	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	1,052,219,805	1,049,232,102	997.16
2	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9호(채권혼합)	2,580,103,647	2,647,951,688	1026.30

다. 발생 일자 : 2012.4.29(일)

구분	집합투자기구 명칭	발생일 설정잔액(원)	발생일 순자산총액(원)	기준가격
1	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[주식혼합]A형	804,809,505	785,639,518	976.18
2	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A형	1,428,738,907	1,403,680,645	982.46

2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(1개월)



4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